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18가단231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허인성, 오태환

변 론 종 결 2021. 10. 7.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 7. 25. 접수 제28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원양어업, 수산물 판매업, 종합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지분율 : B 명의 10%, 피고 명의 20%, D 명의 35%, E 명의 35%이)이다.
- 피고는 B의 배우자(2017. 8. 29. 협의이혼 신고)였고, D, E은 B과 피고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물품 수입 및 관세 면제

- 이 사건 회사는 2004년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하고, 러시아 현지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명태 및 기타 어종 등을 어획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내용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합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 이 사건 회사는 2004. 8. 31.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계획 신고에 따른 합작사업 실행을 위하여 관세감면 물량 배정을 신청하였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서류 등을 기초로 2004. 9. 14. 무렵 이 사건 회사에게 관세감면 추천물량을 배정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러시아산 냉동명태에 대한 합작수산물 감면 추천을 받아 2011. 3. 17.부터 2015. 8. 3.까지 부산세관장에게 러시아산 냉동명태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함으로써 위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었다(이하 위 물품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 부산세관장은 2016. 2. 4.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사건 회사는 합작상대방 회사와 합작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합작회사 설립 없이 기존 합작상대방회사와 합작신설회사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해외합작어업 사업자자격 및 합작 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효력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날 부산세관장에게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정관에는 …… , 이 사건 주식보유 관련서류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가 등재된 것으로 표기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합작신설회사의 지분 50%를 취득한 사실 없다면 원양산업발전법상 해외합작원양어업으로 볼 수 없으며, 관세법상 관세감면 추천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

○ 부산세관장은 위 합작수산물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가 관세 감면 요건인 러시아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액 부정감면을 받았다는 사유로 2016. 3. 11. 및 2016. 3. 17.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물품(9건의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로 합계 3,292,269,810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위 과세처분의 납부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부산세관장은 2016. 5. 3.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기하여 B 및 피고, D, 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B 및 피고, D, E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이 사건 회사 및 B, 피고, D, E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7. 12. 이 사건 회사, B, 피고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D, E의 심판청구 대하여는 D, E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후 부산세관장은 D, E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2017. 8. 10. D과 E 주식 지분의 실제 소유주가 B임을 전제로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B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관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이 사건 회사, B, 피고'로 지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1 과세처분', 제2차 납세의무자를 'B'으로 지정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2 과세처분',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B에 대하여 발생한 관세 및 가산세, 가산금 등의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관련 소송 등의 경위

○ 이 사건 1 과세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 및 B, 피고는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3286호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4.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부산세관장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누22569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9. 15.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의 내용에 들어맞게 채집 또는 포획하여 수입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 사건 2 과세처분에 관하여 B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3931호로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9. 7. 4.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부산세관장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누2257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9. 15.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 공제 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거나 이 사건 물품이 이 사건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의 내용에 들어맞게 채집 또는 포획하여 수입되었다고 인정하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회사 및 B 등은 이 사건 물품 등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를 부정감면 받았다는 사유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173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B 및 이 사건 회사 등이 부산고등법원 2015노63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7. 9. 27. B 및 이 사건 회사 등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 2017도174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12.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 2. 16. 접수 제5905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원 2017. 7. 25. 접수 제28295호로 2017. 7.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 피고 명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바.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 및 무자력

○ 이 사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B의 체납금액,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 8. 23.을 기준으로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및 가산세, 가산금 합계 2,671,860,460원(= 관세 1,088,772,200원 + 809,528,540원 + 가산금 773,559,220원, B은 이 사건 1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금액은 모두 완납하였고, 위 금액은 이 사건 2과세처분에 대한 체납액이다)이다1).

○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바,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B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에 대한 2차 납세 의무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미 이루어져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가 기한까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기해 과점주주 등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B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인 자신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 등에게 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최초 부과처분이 이미 행하여진 후이고, D, E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B에 대하여 다시 이루어진 부과처분도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후 그 기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고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6. 12. 7. 2006다5915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은 유효하게 존재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만 후일 그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로 하여금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으로 정하고, 제35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련 법률에다가 앞서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B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은 이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한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 그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므로(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1)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217764 판결 등 참조).